

[]징계처분
[]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사유설명서
[]징계부가금 감면처분
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소 속	직위(직급)	성 명
주 문	징계 종류,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	
이 유	불임의 징계 의결서,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과 같음	
「감사원 징계규칙」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. 년 월 일 처분권자(처분제청권자) 직인		
불임: 징계 의결서, 징계부가금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		
유의사항		
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		